◉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-196호

국유재산법 제38조(원상회복), 동법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,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5년 12월 15일

충청지방우정청장

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1. 근거법규: 국유재산법 제38조(원상회복), 동법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
2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5.12.15. ~ 12.28.)
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점유자			대상 재산	점유면적(㎡)	허가기간
상 호	성 명	주 소			
예쁜*집	오지*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***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*** 1층 일부	건물사용 85.23 건물전용 75.00 토지사용 29.46	2024.6.14. ~ 2025.6.13.
		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*** 지하 일부	건물사용 36.49 건물전용 32.10 토지사용 12.61	

4. 공고내용

가.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2025.6.14.자로 종료되었고,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분부재, 이사,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안내하오니 **국유재산 원상회복 후 2026.1.12.까지 반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,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유재산 원상회복(행정대집행)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우리 기관 또는 제3자가 대집행하며 그 비용은 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.

5. 기타

가.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(042-611-11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